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단225908 판결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우희창, 장지혜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D

2. E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을 매매대금 55,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는 원고에게 ① 2018. 3. 19. 사단법인 F 소속 G이 점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 ② 별지2 기재와 같은 H 공식서비스센터의 정비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비내역서’라 한다), ③ 자동차표준점검표를 각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비내역서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위 각 서류 중 이 사건 차량의 사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3.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란에는 ‘무’란에 표기가 되어 있고, 18. 자동차의 상태표시란에는 후드 부분에 교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19.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에는 후드란에 표기가 되어 있다.

또한 하단에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란에는 “13.항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H 공식서비스센터 정비내역서

입고란에 2016. 3. 7., 출고란에 2016. 3. 10.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옆 공임란에는 한글로 본넷 교환, 앞범퍼 교환, L/H 라이트 교환, R/H 라이트 교환, 사고부위 도장, 콘덴션 교환이라는 표기가 있으며, 부품명란에는 영문으로 Hood, Air duct, Side panel, Left support, Right support 등 30개 부품이 표기되어 있다.

입고란에 2016. 8. 18., 출고란에 2016. 8. 23.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옆 공임란에는 한글로 뒤범퍼 교환, 뒤 PDC 센서 교환, L/H 리플렉터 교환, 사고부위 도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부품란에는 영문으로 Bumper trim, Mount rear 등 8개 부품이 표기되어 있다.

(3) 자동차표준점검표

H 기준에 따른 사고 손상보수란에는 ‘유’란에 표기가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3. 26.경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6. 3. 7.자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2016. 3. 7.경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본넷 교환, 앞범퍼 교환, L/H 라이트 교환, R/H 라이트 교환, L/H 앞펜더 교환, R/H 앞펜더 교환, 전면 덕트교환, 사고부위 도장, 콘덴션교환 등 수리작업이 있었고, 수리비로 10,698,040원이 청구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주식회사 I 서초중앙서비스센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수리내역 중에 이 사건 차량의 차체를 이루는 주요 골격에 대한 수리나 에어백 교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후드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판매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E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서초중앙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드 교환, 앞범퍼 교환, L/H 라이트 교환, R/H 라이트 교환, L/H 앞펜더 교환, R/H 앞펜더 교환, 전면 덕트 교환 등의 수리가 이루어졌고, 2016. 8. 18.경에도 사고로 인하여 뒷범퍼 등 교환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는 후드 교체만 표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이 차량의 사고경력 및 수리력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이력 수리내역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E는 유의미한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교부한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는 후드 교환만 체크되어 있고, 2016. 3. 9.경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과 2016. 8. 18.경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고부위 미고지에 따른 시세하락액 10,351,8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5,35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란에는 ‘무’라고 표기되어 있고, 자동차의 상태표시란에는 후드 부분에 교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에는 후드란에 표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검기록부 하단에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 사고가 있다고 표기하고,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유무란에 ‘무’로 표기된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E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점검기록부 외에도 이 사건 정비내역서와 사고 손상보수란에 ‘유’로 표기된 자동차표준점검표를 함께 교부한 점, ④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정비내역서에는 2016. 3. 7.자 사고와 2016. 8. 18.자 사고로 인한 부품과 공임 등 정비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차량의 사고경력 및 수리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경력 및 정비내역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경력 및 정비내역을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2018. 3. 19. 사단법인 F 소속 G이 점검한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유무란에 ‘무’로 표기된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거짓된 내용의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

[별지 1]

차 량 목 록

1. 차량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1. 차 종 : 대형 승용

1. 용 도 : 자가용

1. 차 명 : J

1. 형식 및 모델연도 : 6A81 / 2015

1. 차 대 번 호 : K

1. 원 동 기 형 식 : N57D30B

끝.

[별지 2]

공식서비스 정비내역서

[illegible]

[illegible]

